

개인정보보호!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

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



국민의 지간 역사
국민의 이끌 나라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알림

1. 관련 : 검역정책과-1328('19.3.21.)호.
2.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성이 회복된 독일을 가금류 및 식용란 수입허용 국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」(농식품부 고시)을 일부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또한, 외교부에서는 동 사실을 독일측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」(농식품부 고시 제2019-15호) 개정전문 1부. 끝.

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자 축산검역과장, 방역정책과장,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, 수입검역과장, 부처(동물검역과장), 농림축산검역본부장(위험평가과장), 식품의약품안전처장(현지설사과장),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수입검사관리과장), 한국육계협회장, 한국오리협회장, 대한양계협회장, 외교부장관(국가수입금지제외과장)

주우관 이민희 사무관 총기록 검역정책과장 전결 2019.4.16.

첨조자

시행 검역정책과-1731 (2019. 4. 16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(어진동)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076 팩스번호 044-868-0449 / lmh6124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 전문

개정 2019.4.16.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-15호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,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“악성가축전염병”이라 함은 구제역·우역·우폐역·아프리카돼지콜레라·소해면상뇌증·사슴만성소모성질병·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를 말한다.
2. “지정검역물”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.
3. “우제류동물”이라 함은 소·돼지·산양·면양·사슴·하마·낙타·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.
4. “반추동물”이라 함은 소·산양·면양·사슴 등 3개 내지 4개의 위를 가진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동물을 말한다.

제3조(수입금지지역 등) ①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1과 같다.

② 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

는 가축전염병 예방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의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. 다만,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(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) ①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·사육·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.

1. 수입허용가능성 검토
2.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
3.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
4.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
5. 수입허용여부 결정
6.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
7. 수입위생조건 제정·고시

8.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

제5조(수입금지 등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검역률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증단·출고증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<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-15호, 2019.4.16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

1. 동물

| 구 분 | 수입금지 지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가. 우제류동물(반추동물을 제외한다) | 미국·캐나다·호주·뉴질랜드·덴마크·스웨덴·핀란드·프랑스·스위스·아일랜드·영국 이외의 지역 |
| 나. 반추동물 | 호주·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|
| 다. 가금류(가금·초생추·종란·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) | 뉴질랜드·호주·캐나다·덴마크·스페인·미국·폴란드·영국·헝가리·프랑스·일본·스웨덴·네덜란드·독일 이외의 지역 |
| 라. 타조류(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) | 뉴질랜드·호주·캐나다·덴마크·미국·프랑스 이외의 지역 |

2.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(육가공품을 포함한다)

| 구 분 | 수입금지 지역 |
|--------------|--|
| 가. 쇠고기 | 호주·뉴질랜드·멕시코·미국·캐나다·칠레·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|
| 나. 돼지고기 | 미국·캐나다·호주·뉴질랜드·스웨덴·덴마크·핀란드·오스트리아·멕시코·칠레·네덜란드·스페인·아일랜드·프랑스·슬로바키아·스위스·이탈리아(가공품에 한함)·영국·독일·브라질(산파까파리나주에 한함)·포르투갈 이외의 지역 |
| 다. 산양고기, 양고기 | 호주·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|
| 라. 사슴고기 | 호주·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|
| 마. 가금육 | ○신선·냉장·냉동 가금육 : 브라질·칠레·호주·캐나다·태국·덴마크·미국·폴란드·영국·헝가리·프랑스·스웨덴·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○열처리된 가금육 : 브라질·태국·중국·프랑스·칠레·덴마크·헝가리·폴란드·스웨덴·일본·호주·네덜란드·영국·캐나다·미국 이외의 지역 |
| 바. 타조고기 |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|
| 사. 캥가루고기 | 호주 이외의 지역 |
| 아. 자비우육 | 호주·뉴질랜드·멕시코·아르헨티나·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|

3.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

| 구 분 | 수입금지 지역 |
|---|---|
| 가. 원유 | 미국·캐나다·호주·뉴질랜드·덴마크·스웨덴·핀란드 이외의 지역 |
| 나. 소의 정액 | 미국·캐나다·호주·뉴질랜드·프랑스·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|
| 다. 소의 수정란 | 호주·뉴질랜드·캐나다·미국 이외의 지역 |
| 라. 돼지의 정액 | 뉴질랜드·덴마크·미국·스웨덴·영국·아일랜드·캐나다·프랑스·핀란드·호주·스위스 이외의 지역 |
| 마. 산양, 면양의 정액 | 호주 이외의 지역 |
| 바.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| 호주(정액 제외)·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|
| 사. 식용란 | 뉴질랜드·호주·캐나다·덴마크·태국·스페인·미국·폴란드·영국·헝가리·프랑스·일본·스웨덴·네덜란드·독일 이외의 지역 |
| 아. 소해면상뇌증(BSE) 관련품목 - 반추동물의 뼈·뿔 등(원피 및 우유 제외) -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: 육골분·육분·골분·발굽분·건조혈장·각분·기타 혈액제품·가수분해단백질(hydrolysed protein)·가금설육분(poultry offal meal)·우모분(feather meal)·건조굳기름·여분·제2인산칼슘(dicalcium phosphate)·젤라틴 및 혼합물(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, 사료첨가제, premixture 등) | 그리스·네덜란드·덴마크·독일·룩셈부르크·벨기에·스페인·아일랜드·영국·이탈리아·포르투갈·프랑스·노르웨이·루마니아·마케도니아·보스니아-헤로체고비나·불가리아·슬로바키아·슬로베니아·알바니아·세르비아·몬테네그로·크로아티아·폴란드·헝가리·오스트리아·스웨덴·핀란드·스위스·리히텐슈타인·체코·일본·캐나다·이스라엘·미국·브라질(36개 국가) |

※ 소해면상뇌증(BSE) 관련품목 중 제외품목

- 순수한 어분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어분
-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사료
-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.15% 이하인 우지
- 소태아혈청
-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돼지혈액, 사료용 돼지 장 가수분해물 및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
-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 설육분, 우모분 및 닭 연골분말
- 국제수정란이식학회 기준에 따라 처리된 소 수정란
- 원피 및 가죽에서 유래한 젤라틴 및 콜라겐
-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제2인산칼슘
-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의 간이나 심장에서 유래한 가수분해단백질
-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시험연구용 또는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(예방백신 등 의약품제조용)의 전혈·혈청·혈장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알부민·글로부린
- 시험·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중 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 SRM에서 유래되지 않은 혈액제품(전혈, 혈장, 혈청, 항체, 항혈청, 혈액응고인자, 적혈구, 백혈구, 알부민), cell lines, hybridoma, monoclonal antibody, tissue culture, a scitic fluid, extract, feces, fluids, hormone, peptides, tissue, urine,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단백질